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및 개정사항 안내

-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법률 제15961호, 시행 2019.6.1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88호, 시행 2019.9.1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31호, 시행 2020.4.6.)
-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영역의 기록은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 을 준수하되, '기재 예시' 는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 본 연수 자료는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학생부 작성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의 영역별 기재 유의사항과 예시를 반드시 확인

■ 주요 개정 사항

- 가.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 신설(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
- 나.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기초교과, 탐구교과) 필수 기재 규정 신설
- 다. 초·중·고 모두 과목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 평가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 라.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규정
- 마. 만성질환 학생의 질병 결석 시 증빙 자료 제출 규정 정비
- 바. 경찰청관서 선도프로그램 참여 시간에 대한 출석 인정 처리 근거 마련
- 사. 출결상황의 '결과' 에 대한 정의 재규정
- 아. 학폭 조치 사항(제4, 5, 6, 8호) 조기 삭제 대상자 선정 조건 구체화
- 자. 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내용 현행화

■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과제별 적용 시기 주요 사항

항 목	내 용	
	1, 2학년	3학년
진로희망사항	삭제됨.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의 '희망분야' 란에 기재	'진로희망사항' 유지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 수상경력	학기당 1개로 제한	제한 없음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	학년당 한 개만 입력	제한 없음
소논문 실적 [연구주제, 참여인원, 소요시간]	창체 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 실적 기재 불가, 교과 세특에는 성취기준에 따라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하고 기재 가능	소논문 실적은 연구주제, 참여인원 소요시간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입력 불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입력 가능(108쪽 참고)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누가기록 필수 96쪽)	클럽명, 활동시간, 특기사항 모두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 기재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방법	교원단체(전교조) 정책협의회 합의서(2019.10.22.)를 반영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전산입력 방법도 그중 하나의 방법임을 명시
서술식 기재영역 분량 축소	•자율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 7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00자 •봉사 1, 2학년 미기재 / 3학년은 500자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청소년단체 활동[3학년만 해당],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 ②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는 항목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 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학교장 허가를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
 -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및 관련 교내 수상 실적
 -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도서출간 사실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교육관련기관 제외), 상호명, 강사명(학생들이 참여한 강의 등의 강사를 말함) 등
- ③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을 제외하고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④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⑤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 로 간주되어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2015.04.09.) 하며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됨.
 - ⑥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2 [처리요령]

- ① 제4조(처리요령) 제2항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② **입력주체 [항목별 입력주체만 입력 가능하며 편의관행을 이유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권한 부여 금지]**

항 목	입력주체
출결특기사항	◦ 학급담임교사
진로희망사항	◦ 학급담임교사 [2020학년도 3학년만 해당]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율활동·진로활동 ◦ 학급담임교사
	봉사활동 ◦ 학급담임교사[2020학년도 3학년만 해당]
	동아리활동 ◦ 지도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교과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2020학년도 3학년만 해당] ◦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020학년도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의 경우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에 따른 보충학습 과정 이수 내역 입력
자유학기활동상황	◦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급담임교사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발견 학년도 학급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

- ③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으로 한정함(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

- ④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2201, 2018.11.19.]

- ⑤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양교육**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 가능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⑥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등)
- 고유명사, 외국 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 ⑦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 활동상황 영역별 노가기록과 행동특성 노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 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졸업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누가기록포함), 자유학기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포함) 등을 말함.

- ※ 학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입력관리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전산입력 방법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함.
- ⑧ 학기 중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 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함.**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함.
- ⑨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입력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직접 입력함.
- ⑩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번호) 입력은 지양함.
- ⑪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 ※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③ [1, 2학년-인적·학적사항, 3학년-인적사항]

■ 2020 주요 개정사항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입력한다.[※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① [1, 2학년]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학생정보가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
- ※ **신입생은 학생정보 중 학생 본인의 개명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
- 개명 시 증빙서류: 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
 - 개명 이외의 학생정보 수정: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 ※ **2학년 학생정보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 ② [3학년] 인적사항 변경 시 처리 방법: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3학년과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 ③ 주소 변경은 별도의 정정 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함.
- ※ **비밀전학의 경우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
- ④ [3학년] 인적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란에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특기사항’란의 입력과 관련한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서식·절차·보관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함].

④ [학적사항]

■ 2020 주요 개정사항

1.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자: 내부결재일 → 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
2. 입학: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옴.

3. 면제 후 조기 귀국한 학생에 대한 재취학 처리가 가능한 경우
4.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전입이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할 수 있음.
5.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전출 시 → 전입 시

-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특기사항’ 란에 입력

※ 학교폭력 관련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학적변동을 제한함.

- ② 입학: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옴.
- ③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④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이력·인적사항·학적사항·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함).
- ⑤ 유예·면제·자퇴·퇴학·휴학·재취학·재입학·편입학·복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
- ⑥ 입학·재취학·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 ⑦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

예)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 단,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은 1일의 공백을 인정,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 ⑧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
- ※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전입이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할 수 있음.

※ 전출교에서는 전출일까지 수업일수를 등록하며, 전입교에서는 [학적]-[전입관리]-[이전 학교출결자료등록]에서 수업일수를 1일 제외하여 등록

※ 전출일에 실시한 전출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은 등록하지 않음.

- ⑨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 전입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

5 [출결상황]

2020 주요 개정사항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은 산입하지 않음
2. [인정결석 사유-신설]: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생리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
4. [질병결석 사유-신설]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경우
5.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6.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7.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고등학생 40일

- ① '수업일수'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 고등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
- ② 출석인정결석 및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가능
 -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 현역병 자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자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함.
- ③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처리
- ④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⑤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⑦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훈령 제331호)
- ⑧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
 - 중도 입학·편입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가정 및 보호시설)교육학생, 건강장애학생(병원학교와 원격수업수강학생)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어도 '개근'을 입력 안함.
 -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입학(하위학년 재취학)의 경우는 재입학 이전과 재입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의 입력 여부를 결정함.
- ⑨ '특기사항'란에는 질병·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
 - ※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 장기결석의 기간/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⑩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민주시민교육과-4047(2020.2.26.):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 고등학생 40일
- ⑪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⑫ [학업중단숙려 참여 학생 출결처리]: 출석인정(정기고사 기간 적용금지)
- ⑬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
 - 출석인정결석 처리: 제4호, 제5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 심리치료를 조치
 - 미인정결석 처리: 제6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조치
- ⑭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는 ⇒ 미인정결석
- ⑮ 법원소년부 조사·심리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 ⇒ 출석인정
- ⑯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대안교육 기간 ⇒ 출석인정
- ⑰ 출결특기사항에 적지 못하는 내용: 해외 봉사활동 및 해외연수, 교외 대회 참가
- 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질병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⑲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출석인정 가능
 -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1일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⑳ 출결상황 특기사항 입력내용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내용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입력 불가 내용
1. 장기결석 / 기타결석 사유 2. 개근 3.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 [제4호, 제5호, 제6호]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 결정일 4. 미인정 유학(결석일수)	1. 횟수가 빈번한 단기결석 사유 2.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사유	1. 해외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2. 교외대회참가 3. 출석인정결석(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외 입력 하지 않음.)

[참고] 정지고사 시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구분(인정비율)	인정 사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시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한 결시 ○ 경조사로 인한 결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의 결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중 결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시한 경우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시 ○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시(증빙자료 첨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단, 결석계 제출 시 첨부 서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기타	○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의 점수 부여: 해당 과목 0점 처리 ○ 학업중단 숙려기간이 중복되어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처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결시의 경우: 미인정 처리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에 의한 보호관찰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결시: 미인정 처리 ○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미인정 처리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결시한 경우(학생 인권 보호에 유의): 질병 처리 ○ 미인정 결사: 최하점의 차하점(-1) 부여, 단 최하점이 0점일 경우에는 0점 부여 ○ 징계로 인한 결사: 미인정 처리 ○ 그 밖에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결시 사유별 인정비율: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함

6 [수상경력]

■ 2020 주요 개정사항

1. 교내상만 기재 : ‘사전 등록된 교내상’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
2. 연간 수상 계획 변경: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 →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

-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만 입력
 -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만을 기재
 -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일,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 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만 입력할 수 있음.
- ②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③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못함(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④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불가.
- ⑤ ‘대회’ 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불가.
- ⑥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관련 수상, 학교운영위원장상, 동문회장상, 재단이사장상,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졸업식 상 중 학교장상만 기재 가능).
- ⑦ 동일한 수상명으로 월별·격월·분기별로 수상한 경우, 동일학기 또는 동일학년 기간 동안 하나의 교과성취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상을 수상한 경우 시상은 할 수 있으나 수상경력에는 하나의 수상실적 내용만 기재
- ⑧ 학급/학년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또는 임명장/인증서 입력 불가
- ⑨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과 국내학교 간 교환학생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상은 교내상으로 입력 가능
- ⑩ 교내 동일 대회로 예선과 결선이 이어지는 대회는 최상위 수상실적 하나만 입력가능

7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① 교내·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②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③ 2020학년도 1~2학년의 경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8 [진로희망사항]

- ① ‘진로희망’, ‘희망사유’ 항목을 입력 [3학년만 적용] / 희망 사유에 부모 직업 식별 요소 입력 불가
- ②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진로탐색 중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

- ③ 진로희망사항은 다음 학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④ 2020학년도 1, 2학년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진로활동 영역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 란에 학생 진로희망을 입력하되, 상급학교 전형자료로는 제공하지 않음.

9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2020 주요 개정사항

1. 자율탐구활동 내용 기재: 정규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결과 [※ 학교에서는 증빙자료 보관해야 함]
2. 동아리활동: 학생은 연간 1개 이상의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는 학년(학기)초에 구성하여 학년(학기)말까지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된 경우 활동한 내용을 동아리별로 모두 기록함.
3.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교외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대회(3학년): 대회 명칭과 참가 내용 입력
4. 진로활동 특기사항 입력 주의 사항: 진로활동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 특성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

- ① 창의적 체험활동은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 란에 문장으로 입력

※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활동 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위주로 입력 [각 영역은 이수 시수가 0시간인 경우에도 특기사항을 입력]

예)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인해 활동내용이 없음.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 학업중단자의 경우 학업중단일을 기준으로 누가기록과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입력

- ② 자율탐구활동*: ㉠정규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기재 가능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1, 2학년] 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3학년] 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 실적은 연구주제, 참여인원, 소요시간만을 기재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함)

- ③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특기사항 입력 가능한 국내 체험활동]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체험활동

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위 세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기재 가능

- ④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단,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미참

- 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⑤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동일 학기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자유학기활동 상황의 진로탐색 활동이 모두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 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해야 함.
- ⑥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되,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음.
- ⑦ [자율활동-임원활동 입력]
- 임원의 활동기간: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
 -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명기간을 활동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단위로 임명한 경우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학기종료일 기준으로 입력
1학기 종료일(2019.08.12.), 2학기 시작일(2019.08.13.)
- ⑧ [동아리활동]
- 실제로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만 누가기록 입력 [인정결석 시에도 입력 불가]
 - 자율동아리[1, 2학년]: 학년 당 1개만 기재 가능. 동아리명 및 동아리 소개(30자 이내)
 - 3학년 교외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대회: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교외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대회에 한해 대회 명칭과 참가 내용은 입력할 수 있으나, 수상 실적은 '특기사항' 란에 기재 불가
 - 학생은 연간 1개 이상의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는 학년(학기)초에 구성하여 학년(학기)말까지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를 변경한 경우,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동아리별로 모두 기록해야 함.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및 청소년 단체활동 특기사항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특기사항	정규교육과정 외 청소년 단체활동 특기사항
학교장승인 시: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기록 [1, 2학년]: '클럽명(이수시간)' 만 입력 가능 [3학년] - 클럽명, 활동시간, 팀내 역할, 포지션, 대회 출전 경력 등 - 17시간 미만이면 클럽명(이수시간)만 기재 가능	학교장승인 시 [1, 2학년]: 학교교육계획에 있어야만 '단체명' 만 기재 [3학년]: 학교교육계획에 상관없이 학교장이 승인하면 특기사항을 기재함.

- ⑨ [봉사활동]
- 특기사항[3학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기록 [1, 2학년은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 가능]
 - '특기사항' 란에 구체적인 기관명은 입력하지 않음.

- 봉사활동 영역의 '시간' 은 공란으로 둬.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 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란 '개인' 으로 관련 사항을 입력함.
- ⑩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보호처분 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⑪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 /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음(1시간 미만 버림).
-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10 [교과학습발달상황]

2020 주요 개정사항

1. 고등학교 모든 학생에 대하여 기초교과(군) 및 탐구교과(군)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2. 수행평가만으로 평가 가능
3.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4. 평가계획에 '평가 요소' 포함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6. 지필평가는 선택형과 서술형 → 선택형과 서답형
7. 고등학교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추가: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 ① 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② 고등학교는 기초교과군 및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
 - ※ 단, 과목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 ③ 교과목 특성상 수업 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

- * 실험·탐구·연구·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 전문교과Ⅱ, Ⅲ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과목, 교양 교과(군),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 및 수강자 수 13명 이하의 소수선택 과목

- ④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⑤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 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 ※ 평가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말함.
- ⑥ 학교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 ⑦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 결과 후속 조치[이의제기 등])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⑧ 지필평가는 '선택형' 과 '서답형' 으로 구분한다.
- ⑨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함.
- ⑩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 ⑪ [3학년] 방과후학교 활동내용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함.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되, 이수시간 입력 기준은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 ⑫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

항목	내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 학교와 다른 경우
전입생 미이수 보충학습과정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중학교의 특정 교과목 또는 고등학교의 공통과목(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학습과정' 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과후학교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0학년도 3학년만)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 ⑬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불가 항목
-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 라.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및 관련 교내 수상 실적,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도서

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K-MOOC

⑭ **유의사항**

- 가. 대회의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 ['대회' 단어 기재 불가]
 나.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는 기재 불가(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1, 2학년))
 다. 영재교육 이수 내용 입력 방식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만 입력,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영재교육기관 이수시간 입력 시 구체적인 학교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⑪ **[독서활동상황]**

① **입력주체**

독서활동상황	입력 주체	입력 경로
교과목별 해당 관련 도서	교과담당교사	[성적]→[성적처리]→[과목별독서활동] 분야: 인문, 사회, 과학, 체육·예술
교과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	담임교사	[학생생활]→[독서활동상황]→[독서활동상황기록] 분야: 공통

② **학기별로 구분하여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입력**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③ **「1학기」, 「2학기」 는 나이스에서 학기별로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됨.**

④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음.

⑤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는 학생 개인이 보관**

⑫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②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③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가능성을 함께 입력**

④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학급교체)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하고, 해당 조치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동일한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

※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

- 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일 경우, 변화된 내용 입력

13 [기타사항]

- ① 학년 중 학급담임교사가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 학급담임교사는 모두 입력
- *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C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C교사 모두 입력
 - * 학급담임교사가 A교사 → B교사 → A교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A교사, B교사, A교사 모두 입력

14 [자료의 보존]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②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 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5 [자료의 정정]

- ①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 가능
- * 해당 증빙 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고, 훈령과 지침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 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이 경우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야 함).
- ③ 정정절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1)의 결재]
- ④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
- ⑤ 허위사실 기재와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수정하는 행위, 부당정정(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정정하는 것(학생 본인 및 가족의 질병명 정정은 예외)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해 시험문제 유출이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감경대상에서 제외됨.

- ※ 학교생활기록부의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 II 출력물과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한다.
-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4단 결재]
 담임(담당) ⇒ 담당(교무)부장 ⇒ 교감 ⇒ 교장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 안됨]
-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기결문서취소 및 정정대장도 수정 불가

15 [참고자료]

- ① [학교폭력 관련 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며,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 시기를 숙지

가.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기재 영역·출결·삭제시기

- ※ 유예(정원 외 학적관리 포함)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

해당년도	처리 절차
당해학년도	학적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이전학년도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 [정정대장작성]-(이름으로조회)-(학생찾기)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

다. 학적변동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시기

라.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방법